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						
외교부 여권정보(여권상 로마자 성명) 활용에 관한 동의 여부'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 □						
 신청	성명	한글		'		
대상자	등록기준지2					
(발급대상자)	주민등록번호			_		
	발급 통수()통					
	※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	
	담당자가 「국어의 로마자 표기법」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3 동의합니다 □					
신청내용	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「국어의 로마자 표기법」에 맞게 로마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외국인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외국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³					
		성		명		
	□부 □모 □배우자					
	□부 □모 □배우자					
	□부 □모 □배우자					
주민등록번호	□ 전부공개	공개신청			루번호를 정확하게	
공개신청 여부 (뒷부분6자리)	□ 신청대상자만 공개					, 양무모, 배우자,
청구사유						
소명자료						
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 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4				증명서 발급 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. □		
신 청 인	성명 한글		(서명 또는 날인)	주민등록번호5		_
	※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	
	담당자가 「국어의 로마자 표기법」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³ 동의합니다. □					
	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				성	
	「국어의 로마자 표기법」에 맞게 로마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명					
	주소			신청인 자격		의
	1-1			휴대전화번호 등		
	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	
위 임 인	성명 한글		서명 또는 날인	주민등록번호5		_
	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(위임장은 별도 첨부).					
20						
시(구)・읍・면장 귀하						
※ 수수료	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1통당 1,000원 ②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(뒷면 참조)					
1. 외교부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영문증명서상 본인(신청대상자), 부모, 배우자 및 신청인의 성명을 여권상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화 동의를 말한니다						

- 2.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 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민법상 법정대리인(후견인, 유언집행자, 상속재산관리인, 부재자재산관리인)이 시(구)읍·면·동의 사무소에 직 접 출석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,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3.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, 담당자가 「국어의 로마자 표기법」에 따라 로마자 성명을 표기 하는 것에 동의하면 로마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됩니다. 그리고 신청 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그 사람의 외국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4.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, 주한 공사나 영 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습니다.
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

- 1.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 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국제운전면허증,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 애인등록증 등)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민법상의 법정대리인(후견인, 유언집행자, 상속재산관리인, 부재자재산관리인)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
 - ② 본인이 「혼인신고특례법」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
 -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
 - ④ 부,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[다만, 사망(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)하거나 국적을 상실(이탈을 포함한다)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⑤ 등록부에 부,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
 - ⑥ 외국인인 부,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 여권상 로마자 성명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
 -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
- 3. **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**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,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 - ① 시(구).읍.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
 -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, 양부모, 배우자, 자녀인 경우
- ※ 「주민등록법」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 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①, 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.
- 4.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표기하는 경우, 여권상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 과 다른 경우에도 여권상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됩니다.
- 5. 등록부에 출생장소 기록은 있으나 국내인지 외국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, 미상이나 불상 등으로 기록된 경우, 그 밖에 출생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장소가 "(Unspecified)"로 현출됩니다.
 - [예시] 제주도에서 일본국 오사카항으로 항해 중 \rightarrow (Unspecified)
 - [예시] 미상 → (Unspecified)
- 6.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망일이 "(Unspecified)"로 현출됩니다.
 - [예시] 2012년 05월 일 미상 → (Unspecified)
 - [예시]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→ (Unspecified)
 - [예시] 2014년 11월 11일 추정 → (Unspecified)
 - [예시]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→ (Unspecified)
- ※ 법 제117조: 제14조제1항·제2항·제7항, 제14조의2,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,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※수수료 면제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
- ②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
- 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청구하는 경우
- ④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청구하는 경우
- ⑤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
- ⑥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
- ⑦ $[5\cdot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<math> 5\cdot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청구하는 경우$
- ®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청구하는 경우
- ⑨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
- ⑩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·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- ①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- ②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⑬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
- ⑷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